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도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990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8월 11일

발 의 자: 송도호 의원(1명)

찬 성 자: 김성준, 김원태, 김형재,
남창진, 민병주, 박승진,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오금란, 유만희, 이상옥,
이상훈, 이영실, 이원형,
이종태, 임규호, 임종국,
전병주, 정준호, 최기찬,
최재란 의원(22명)

1. 제안이유

- 법인택시의 경우 운전자 부족 등으로 운행률이 저조함에도 현행 택시 차령제도는 차량의 상태나 실제 운행 가능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사용 연한을 적용하여,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차량도 차령 만료만으로 조기 폐차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이는 자원 낭비는 물론, 경영 여건이 어려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 2023년 3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택시의 기본차령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전국 다수의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이미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여 시행 중임.
- 이에 서울수도 평균주행거리 등 차량 운행 실태를 반영하여, 택시 기본차령의 연장 근거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차량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택시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 (안제11조제1항 신설)

나. 기본차령 및 연장 조건은 시장이 정하도록 명시(안제11조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자동차의 차령)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차령 및 연장 조건은 평균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자동차의 차령)</u>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차령 및 연장 조건은 평균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u>제11조 ~ 18조</u> (생략)	<u>제12조~19조</u>(현행 제11조~제19조 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비용부담 절감을 위한 기본차령 연장을 취지로 하고 있으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선희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이설화

☎ 02-2180-7952

e-mail : sseol789@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